

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

아래의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와 이용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이며,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고(제2023-412호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→ 알림 → 공고 → '비대면' 검색 → 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」 안내

● 비대면진료가 무엇인가요?

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,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



● 비대면진료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
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✓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

☞ (의원급 의료기관) 만성질환자 1년 이내, 그 외 환자 30일 이내
(병원급 의료기관) 희귀질환자 1년 이내, 수술 치료 후 관리 환자 30일 이내

✓거주지 주변에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 ☞ 섬·벽지 거주자

✓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

☞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, 장애인

✓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경우

✓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

● 내가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잘 모르겠어요. 쉽게 알 수 없나요?

[환자]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세요.

[의사]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신청하면 의무기록을 통해 진료받았던 질환과 기간 내에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.

✓의원(치과의원, 한의원 포함)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있나요?

☞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은 진료받은지 1년 이내,
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.

✓병원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 포함)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있나요?

☞ 희귀질환자는 진료받은지 1년 이내, 수술 등을 받은 후
30일 이내 관리*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.

*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, 검사결과의 설명 목적

[환자]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없다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의료기관에 신청하세요.

[의사]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신청하면 수신자 조회 시스템에서 초진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.



구분	확인주체	
	환자 (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)	의료기관 (환자 진료 전 확인)
삼벽지 거주자	· 주민등록 주소지가 삼벽지 지역인지 확인	· 수진자조회 시스템으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 (서류 확인 불필요)
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	·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확인	
장애인	·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증명서 확인	
감염병 확진 환자	· 격리통지서,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 내용을 의료기관에 제시	· 환자가 제시한 내용 확인 후 진료기록부 기록
18세 미만 소아 (휴일·야간 시간대)	· 주민등록 상 연령, 진료시간 확인	· 주민등록번호, 시간 확인

- **대상환자는 원하면 모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?**
비대면진료 대상환자라도 **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 내원**하여야 합니다.

- ✓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
- ✓ 사전문진 또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하는 경우

대상환자 중 재진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았던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.

[예시] A 의원을 방문하여 고혈압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 A 의원 의사에게 고혈압에 대해서 비대면진료 가능, 감기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를 원할 경우 내원 필요

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재진이 원칙이지만,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가능(의사-보호자 간 상담)합니다.

(**처방은 불가능**하며,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원해주세요)

● **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✓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인지, ✓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한 뒤,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.
자세한 비대면진료 실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비대면진료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일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합니다.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. ▶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사전에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-------------	--



사전문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환자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대상환자 관련 정보, 건강 상태, 진료 희망사유 등을 정확히 전달합니다. ▶ [의료기관] 환자 본인여부, 대상환자 여부, 내원 필요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료 접수를 합니다.
------	---



비대면진료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의사] 화상진료가 원칙이며, 환자를 대면하지 않으므로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며 진찰합니다. ▶ [환자]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모두 제공합니다.
-------------	---



처방전 발급·전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의사]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합니다.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. ▶ [환자]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을 지정합니다.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▶ [의료기관] 팩스,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합니다.(처방전 방문 수령의 경우 본인만 가능)
--------------	--



비대면조제 ·의약품 전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약사] 환자와 사전상담을 통해 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고, 의약품 수령방식 등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의약품을 조제 후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합니다.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합니다. (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, 재택수령의 경우 삼벽지 거주자, 65세 이상 장기 요양등급자, 장애인, 감염병 확진 환자, 희귀질환자만 가능)
------------------	--